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75호 2012. 9. 5. (수)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19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19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 정선군 규칙 제1198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가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4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2-88호 정선(고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31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2-616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4
- 정선군 공고 제2012-618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정선군 공고 제2012-619호 「정선군 화암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 정선군 공고 제2012-630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55
- 정선군 공고 제2012-648호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56
- 정선군 공고 제2012-651호 2012년도(FY2011)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59
- 정선군 공고 제2012-653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5
- 정선군 공고 제2012-658호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90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9. 5.

정선군 규칙 제119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정원 중 5급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중 일반직으로 미 전환된 인원이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감소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사무직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선군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68	271	11	86	20	87	93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453	226	6	59	16	67	79
4급 소계	1	1	0	0	0	0	0
서기관	1	1					
4~5급 소계	3	2	0	1	0	0	0
행정	1	1					
행정·사회복지	1	1					
의무·보건·간호	1			1			
5급 소계	24	11	2	1	1	4	5
행정	5	4	1				
농업	0						
의무	0						
시설	0						
행정·사회복지	0						
행정·시설	4	4					
행정·별정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9					4	5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무·의료기술	1			1			
6급 소계	120	68	3	8	4	17	20
행정	49	28	3		1	7	10
세무	3	3					
전산	1	1					
농업	3	3					
녹지	2	2					
보건	0						
시설	9	9			0		
행정·세무	3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0						
행정·농업	8	2				1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녹지	2	2					
행정·공업	4	3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3					
행정·시설	4	4					
전산·방송통신	0	0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5	1				4	
행정·지도사	0			0			
농업·지도사	0			0			
보건·간호	1			1			
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행정·방송통신·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2			2			
7급 소계	146	75	1	22	5	19	24
행정	47	25	1		0	7	14
세무	7	6					1
사회복지	6	3				3	
전산	1	1					
공업	1	1			0		
농업	3	3		0			
녹지	2	2					
보건	8			8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3	1			2		
시설	22	15			1	2	4
방송통신	0	0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0		3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6	5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1	1		0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8급 소계	111	48	0	22	5	18	18
행정	30	15			1	6	8
세무	1	1					
사회복지	3					2	1
전산	2	2					
공업	2	1			1		
농업	4	1				2	1
녹지	3	3					
보건	0			0			
의료기술	4			4			
간호	1			1			
환경	1	0			1		
시설	13	6			1	4	2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0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0			1		
행정·시설	7	3			0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0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9급 소계	48	21	0	5	1	9	12
행정	11	4				4	3
세무	3						3
사회복지	11	4				2	5
사서	1	1					
공업	3	2			1		
농업	5	2				2	1
녹지	1	1					
환경	2	2					
보건	5			5			
의료기술	0			0			
시설	2	1				1	
행정·시설	1	1			0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연구직 계	4	2	0	2	0	0	0
연구사 소계	4	2	0	2			
학예연구·별정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지도직 계	20	3	0	17			
지도관 소계	2	0	0	2	0	0	0
농촌지도관	2			2			
지도사 소계	18	3	0	15			
농촌지도사	17	3		14			
농촌지도사·농업연구사	1			1			
별정직 계	2			2	0	0	0
6급상당 소계	1			1			
보건진료원	1			1			
7급상당 소계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기능직 계	88	39	5	6	4	20	14
6급 소계	4	3	0	0	1	0	0
운전·기계	3	2			1		
통신·전기	0						
필기·조무	1	1					
7급 소계	18	12	0	1	2	3	0
토목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I	통신	2	2					
	전기	0	0					
	기계	2	0			2		
	운전	4	3		1			
	필기	0	0					
	조무	4	2			1	1	
	운전·기계	2	2					
	통신·전기	1	0			1		
	필기·조무	1	1					
8급 소계		11	4	1	0	1	5	0
II	토목	1	1			0		
	통신	0	0					
	전기	1	0			1		
	기계	0	0				0	
	영사	1	1					
	운전	4	0				4	0
	필기	1	1					
	워드	1	0				1	
	전산	1	1					
	조무	1	0	1				
9급 소계		55	20	4	5	0	12	14
III	토목	3	3					
	전화상담	1	1					
	통신	0						
	전기	2	2			0		
	기계	5					1	4
	열관리	1	1					
	운전	18	4	1	4		4	5
	필기	6	3	1	1		1	
	워드	1		1				
	전산	0	0					
	조무	17	5	1			6	5
	통신·전기	1	1					

개 정 이 유

- 2018 동계올림픽 한시기구 설치,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기구 및 인력 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정원의 총수 : 568명(현행과 같음)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 본 청 : 271명(증 4명)
 - 의 회 : 11명(현행과 같음)
 - 직속기관 : 86명(현행과 같음)
 - 사 업 소 : 20명(감 4명)
 - 읍 면 : 180명(현행과 같음)
- 직렬별 정원조정(별표)
 - 일반직
 - 행정·시설 5급 증1명, 행정8급 증3명, 행정·전산 증2명, 환경8급 △1명, 행정·환경8급 증1명, 행정·사회복지 8급 증1명, 행정8급 △1명, 시설9급 △1명, 행정6급·농촌지도사△1명, 농업6급·농촌지도사 △2명
 - 기능직 : 기능7급 증3명, 기능9급 △8명
 - 연구·지도직 : 농촌지도사 증3명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9. 5.

정선군 규칙 제1197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를 “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으로 하고,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생태환경과) 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제48호부터 제57호까지 및 제59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동계올림픽지원단)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앙 및 도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3.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4. 동계올림픽 개최지사례연구
5.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
6.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
7.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환경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9. 동계올림픽종목 선수 육성 지원
10.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11. 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
12.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13. 동계올림픽 시설 접근 도로망 확충
14.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15.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올림픽 시설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지원
17.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18.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 투자 유치
19.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20.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21. 육상실업팀 육성
22.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23.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24.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5.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26.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7.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28.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29.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30. 기타 체육 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②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장” 을 “생태환경과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세무회계과장·관광문화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으로, 농업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3조(실장·과장의 직급) ----- ----- ----- ----- -----, <u>민원봉사과장·건설방재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생태환경과장</u></u>----- ----- ----- ----- -----.</p>
<p>제9조(녹색환경과) <u>녹색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120. (생 략)</p>	<p>제9조(생태환경과) <u>생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120. (현행과 같음)</p>
<p>제11조(관광문화과) <u>관광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47. (생 략) 48.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49.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50. 육상실업팀 육성 51.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52.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관리 53.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4.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도 55.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56.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57.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p>	<p>제11조(관광문화과) ----- ----- 1.~47.(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58. (생 략) 59.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0.~66. (생 략)</p> <p><u><신 설></u></p>	<p>58. (현행과 같음) <u><삭 제></u> 60.~66.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의2(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 지원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앙 및 도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3.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4. 동계올림픽 개최지 사례 연구 5.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 6.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 7.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환경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9. 동계올림픽종목 선수 육성 지원 10.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11. 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 12.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13. 동계올림픽 시설 접근 도로망 확충 14.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15.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6. 올림픽 시설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지원 17.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 방안 마련 18.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 투자 유치 19.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20.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21. 육상실업팀 육성 22.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23.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24.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5.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현 행	개 정 안
	<p>26. <u>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u></p> <p>27. <u>군단위 체육대회 개최</u></p> <p>28. <u>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u></p> <p>29. <u>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u></p> <p>30. <u>기타 체육 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u></p>

개 정 이 유

-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사무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신설되는 한시기구 부서장의 직급 책정(제3조)
 - 동계올림픽 지원단장 : 지방행정·시설5급
- 행정기구의 조정(제9조 및 제14조의2)
 - “녹색환경과”의 명칭을 “생태환경과”로 변경
 -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 지원단” 신설
- 사무의 조정(제11조 및 제14조의2)
 - 관광문화과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육상실업팀 육성”,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도”,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을 삭제함.
 - 신설되는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중앙 및 도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동계올림픽 개최지사례연구”,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운영”,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환경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동계올림픽종목 선수 육성 지원”, “올림픽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 추진”, “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 “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 추진”, “동계올림픽 시설 접근 도로망 확충”,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올림픽 시설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지원”,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 “관광·숙박시설 등 민자 투자 유치”,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 관리”, “육상실업팀 육성”,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 관리”,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기타 체육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를 분장함.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2. 9. 5.

정선군 규칙 제1198호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 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
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의 기타비용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 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 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

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군수는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의 내용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설계도서 등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지체없이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③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 「정선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9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11조(수도시설 손괴 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 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지 10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수도 급수조례」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도공사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 공 사 명 :

○ 위 치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 :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의 경우 사업승인서 사본.
 2.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3.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 도면.
 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정 선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제8조제1항 관련)

정선군 ○○읍면 ○○번지 내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조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정선군수(이하“갑” 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 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사용량 (A)	단위부담액 (B)	부담금액 (A×B)	비 고
천톤/일	원	천원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정선군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	------	-----------	-------	------

1	사업승인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까지)	40% 이상	천원
2		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30% 이하	천원
3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30% 이하	천원

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공장시설, 기타시설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1	건축허가 후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까지)	50% 이상	천원
2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50% 이하	천원

다. 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분납수	부과시기	납부기한(납부일)	비율(%)	납부금액
1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50% 이상	천원
2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년 월 일 까지)	50% 이하	천원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처 분 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				
<p>「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정 선 군 수 귀 하</p>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오납입	○ 차분	정당납부 (납부액)	기납부 납입액	과오 납입	과오납 년 월 일	환 부	
						일시	금액
	과오납 합계액				총당후잔액 (환부액)		
총당금액	○ 차분	미납금액	총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총당금액			총당후 미납액			
<p>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인)</p>							

[별지 제9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수 신		정선군수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차분	내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		정선군수			
년. 월. 일	○차분	내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별지 제10호]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경	수도시설 좌 우 측	수도시설 하 단	수도시설 상단
D=300mm이상	50cm이상	50cm이상	50cm이상(보호층 설치)
D=300mm미만	30cm이상	50cm이상	30cm이상(보호층 설치)
비 고	-	-	횡단 시 하단기준 설치가능 구경별 심도이상 성토불가

개 정 이 유

-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금액산정 및 부과징수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2조)
- 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제3조)
- 원인자부담금의 협약서 체결(제8조)
-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제9조)
- 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제12조)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2-88호

정선(고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주택법 제16조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해당시 1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연장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기한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택법 제17조(다른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등) 제1항 제5호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 08. .

정 선 군 수

I.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내역

- 가. 대지위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98번지의 8필지
- 나. 사업주체 : (주)진민알앤디 대표이사 이상훈
- 다.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라.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마.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규 모 : 공동주택 7개동 375세대(지하1층,지상15층)
- 사. 대지면적 : 16,213㎡
- 아. 건축면적(연면적) : 3,760.37㎡(46,779.08㎡)
- 자. 사업승인일자 : 2007.04.06.
- 차. 사업승인번호 : 2007-도시교통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 카. 취소사유 : 사업 미착공

II.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의 결정,같은 법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Ⅲ. 군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지구 단위계획	정선 고토일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98번지 일원	-	18,687	18,687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변경없음)

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계획

구분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배 치	면적	비 고
1	공동주택	24% 이하	240% 이하	15층이하	조망 및 바람통행길 확보 (4~6연립)	16,213	
2	도 로	-	-	-	-	1,946	
3	기타부지	-	-	-		528	

※ 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분할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결정일 (최초 (변경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36	8	국지 도로	909	소로2-34 고한리216-20	고토일주거지역계 고한리180전	일반도로	'03. 12. 13	
변경	소로	2	36	8	국지 도로	647	소로2-34 고한리216-20전	소로2-40 고한리197대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75(81)	중로2-8 고한리273전	중로2-8 고한리235전	일반도로		노선분리
기정	소로	2	40	8	국지 도로	129	소로2-36 고한리203전	중로2-8 고한리198전	일반도로	'03. 12. 13	
변경	소로	2	40	8	국지 도로	148 (148)	소로2-36 고한리198전	중로2-8 고한리203-1도	일반도로		선형변경
폐지	소로	2	41	8	국지 도로	47	소로2-36 고한리203-1도	중로2-8 고한리198전	일반도로	'03. 12. 13	노선폐지

()내서는 제1종지구단위구역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616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0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확대(안 제3조)
 -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 위원회 심사기준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회 위원 수당규정 개정(안 제8조)
 -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9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60-2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u></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 2. (생략)</p> <p>3. <u>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u></p> <p><신설></p> <p><u>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신설></p> <p><u>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u></p>	<p><u>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기능) ①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u></p> <p><u>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u></p> <p><u>제8조(수당 등)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u>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u></p> <p><u>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 ----- ----- -----.</u></p>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략)
-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7. ~ 8. (생략)

③ ~ ⑥ (생략)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1.7.29] [[시행일 2011.10.30]]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정선군 공고 제2012-618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명시된 조문 변경
 - 제명변경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삭제(안 제1조, 안제2조)
 - 신고 및 대상에 있어 관련법규 명시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17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전화 560-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1. 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2. 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 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4. 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5. 법 제85조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6.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범질서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및 「<u>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u>」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2. <u>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3. <u>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송행위 (모텔, 찜질방, 펜션 등)</u> 4. <u>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u> 5. <u>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u> 6. <u>지역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u> <p>② ~ ③ (생략)</p>	<p><u>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u></p> <p>제1조(목적)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 ----- ----- ----- -----</p> <p>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2. <u>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u> 3. <u>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 등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u> 4. <u>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u> 5. <u>법 제85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u> 6. <u>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u> <p>② ~ ③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51조의3 (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619호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정 선 군 수

1. 조례명 :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조례안

1. 개정취지

- 정선군 화암관광지내 캐라반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안 제1조, 제2조)
-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규정 하고자 함.(안 제9조)
- 시설관리자의 자체운영규정을 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 “캐라반”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하고자 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관광문화과 (우편번호 233-801)

- FAX 제출 : 033-560-2953
- 문의전화 : 033-560-2370

붙임 : 1)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참고사항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화암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를 “제67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
5. “단체”란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②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암동굴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화 암 동 굴			야 영 장		캠 핑 캐 라 반		모 노 레 일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지 사용 료	데크사 용료	3~4인용	6~7인용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 이
일 반	개 인	5,000	3,500	2,000	6,000	10,000	· 성수기 : 80,000 · 주말, 공휴일 : 60,000 · 평일 : 50,000	· 성수기 : 100,000 · 주말, 공휴일 : 70,000 · 평일 : 50,000	2,000	1,500	1,000
	단 체	4,500	3,000	1,500							
군 인	개 인	3,500	2,500	1,000							
	단 체	3,000	2,000	800							
투 표 자	개 인	3,000	2,000	800							
	단 체	2,500	1,500	500							

※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중복감면은 불가함.

※ 성수기 : 7월 ~ 8월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별지 제1호서식】

화암동굴 관람권

(앞면)

<p>관람권 ADMISSION TICKET</p> <p>일련번호 : 발행내역 발행일자 : 합계금액 :</p>	<p>본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p> <p>절취선</p> <p>동굴 전경사진</p>	<p>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p> <p>일련번호 : 발행일자 : 발행내역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p>
---	---	---

(뒷면)

<p>금과 대자연의 만남! 환상의 금광테마동굴</p>	
<p>화암동굴은 1992년부터 1945년까지 금을 캐던 천포광산(泉浦鑛山)으로 당시 연간 순금 22,904g을 생산하는 국내 5위의 금광이었다. 이 동굴은 당시 굴진작업 중 발견한 천연동굴과 금을 캐던 폐 갱도를 추가 개발하여 공개한 테마동굴로서 금광개발에 따른 역사성과 2,800㎡의 자연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의 총연장은 1,803m이다. 이 동굴은 역사의 장(16개 Zone),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11개 Zone) 금의세계(13개 Zone), 대자연의 신비(자연동굴)로 5개장 41개 Zon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동굴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내 최초의 테마동굴이다. 화암동굴은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p> <p>《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p>	

시설이용권(야영권)

(앞면)

<p>야영권 ADMISSION TICKET</p> <p>일련번호 : 발행내역 발행일자 : 합계금액 :</p>	<p>본 야영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p> <p>절취선</p> <p>전경사진</p>	<p>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p> <p>일련번호 : 발행일자 : 발행내역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p>
---	--	---

(뒷면)

주변관광지 안내

- 화암8경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물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 화암약수 → 소금강 → 물운대 (3시간 소요)
 - 물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역산 → 민동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역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시설이용권(캐라반)

(앞면)

이 용 권 ADMISSION TICKET 일련번호 : 발행내역 : 발행일자 : 합계금액 :	본 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절 취 선 캐라반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 발행일자 : 발행내역 :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
---	---	--

(뒷면)

주변관광지 안내

- 화암8경
 - 제1경(화암약수), 제2경(거북바위), 제3경(용마소), 제4경(화암동굴), 제5경(화표주), 제6경(소금강), 제7경(물운대), 제8경(광대곡)
- 등산코스
 - 화암약수 → 소금강 → 물운대 (3시간 소요)
 - 물운대 → 광대곡 (왕복 2시간)
 - 화암약수 → 불암사 → 구슬동 → 지역산 → 민동산 → 증산 (6시간 소요)
 - 화암약수 → 지역산 → 삼내약수(4시간 30분 소요)

《안내 및 문의》
 •전화 :
 •홈페이지 :

시설이용권(모노레일 승차권)

(앞면)

모노레일승차권 BOARDING TICKET 일련번호 : 발행내역 : 발행일자 : 합계금액 :	본 승차권은 당일에 한하여 1회 사용가능 합니다. 화암동굴 관람은 별도 관람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절 취 선 모노레일카 전경사진	화암관광지 Hwa-am tourist resort 일련번호 : 발행일자 : 발행내역 : 합계금액 : 정선군 로고
--	--	--

(뒷면)

정선 화암동굴의 신비로운 세계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800㎡에 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대광장으로 이루어진 천연동굴이 함께하는 화암동굴에는 동양최대를 자랑하는 높이 28m의 황종유벽과 대석순, 대석주, 마치 빗어놓은 듯한 마리아상, 부처상, 장군석, 그리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 석순, 석화, 곡석등 동굴 생성물들이 가득하여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석회석 동굴이며 또한, 금과 대자연, 동화속의 금개비, 은개비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내최초의 테마형 동굴로서 5개장과 41개 ZONE으로 구성된 1,803㎡관람구간을 통하여 새롭고 다채로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 전 화 :
- 홈페이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관광지 및 화암동굴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67조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 대학생, 병장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 5. “단체”라 함은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7. “관람료”라 함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내를 입장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병장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4. “어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교학생, 대학생, 병장 이하의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은 제외한다. 5. “단체”란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관람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자와 동굴을 탐방하기 위하여 동굴 내를 입장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u>각 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1. (생략)</p> <p>제8조(관람의 제한) 다음 <u>각호의1</u>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9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7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제8조(관람의 제한)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요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및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제한으로 인한 반환사유 발생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u>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u></p> <p>2. <u>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p> <p>3. <u>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u></p> <p>② <u>사용자가 시설물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 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u></p> <p>제13조의2(자체운영규정) <u>관리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u></p>

관 계 법 령 발 췌

□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 할 수 있고, 관광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2008.6.5.>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지 제2010-1호)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보상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참고자료]

타 지자체 시설사용료 현황

(단위 : 원)

지자체	구 분	성수기	비 수 기		운영주체	비고
			주말·공휴일	평 일		
동해시	캐라반 3인용	110,000	66,000	44,000	시설관리공단	
	캐라반 4인용	110,000	66,000	44,000	“	
	캐라반 6인용	132,000	88,000	66,000	“	
연천군	캐라반 4인용	80,000	60,000	40,000	시설관리공단	
	캐라반 6인용	100,000	80,000	60,000	“	
가평군	캐라반 4인용	120,000	100,000	60,000	개인사업자	
서산시	캐라반 4인용	180,000 (200,000)	140,000	100,000	개인사업자	
	캐라반 6인용	240,000 (260,000)	200,000	140,000	“	

※ 서산시는 성수기와 극성수기()로 구분

정선군 공고 제2012-630호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공고

병방산 군립공원 휴양 및 편익시설 [짚와이어(자연체험시설)설치사업] 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 8 . 21 .

정 선 군 수

1. 송달 받을 자의 주소·성명

- o.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5번지 고 용 군

2. 재결사항

구 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보상금 (원)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단 가	금 액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계		1필지		8,529㎡		15,994,890				
토 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산105		임	8,043㎡	1,950	15,683,85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25번지	고용군		
			임	486㎡	640	311,040				

3. 재 결 일 : 2012. 7. 20.

4. 공고기간 : 2012. 8. 21. ~ 2012. 9. 5. (15일간)

5. 본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붙임 : 재결서 정본 1부

정선군공고 제2012-648호

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2. 9. 3

정 선 군 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안내

- 열람기간 : 2012년 9월 3일 ~ 9월 28일
- 열람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열람대상 : 1,531필지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원)

○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2년 9월 3일 ~ 9월 28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및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땅값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의 땅값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2012.1.1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의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땅값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의 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등에 사용됩니다.

정선군공고 제2012-651호

2012년도(FY2011) 정선군 지방재정공시 공고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등), 동법시행령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에 의거 『2012년도 정선군 지방재정공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8. 31.

정 선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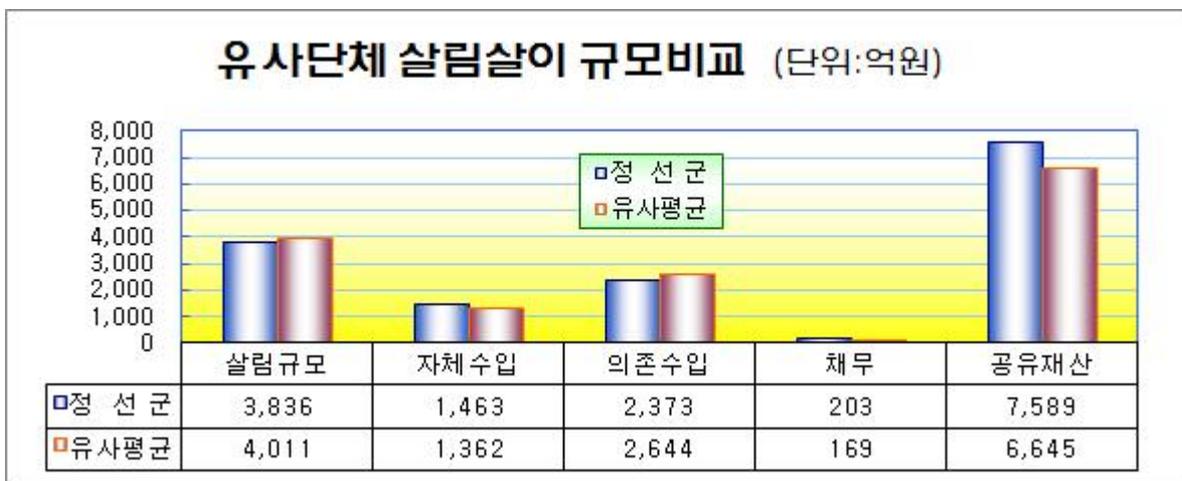
□ 우리 군의 2011년 살림규모 (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는 3,836억원으로, 전년대비 13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63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76만원입니다.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373억원으로 우리 군 살림규모의 61.9%입니다.

□ 2010~2011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 88억원과 태백권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군의 채무는 203억원이며, 군민 1인당 채무액은 51만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2011년 토지 외 4종(456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4종(369억원)을 매각하여, 전년대비 86억원이 증가하여 총 7,58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군의 20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011억원)보다 175억원이 적은 3,836억원입니다.

-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1,362억원)보다 101억원이 많은 1,463억이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644억원)보다 271억원이 적은 2,373억원입니다.
-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169억원)보다 34억원이 많은 203억원입니다.
- 공유재산액은 동종단체 평균액(6,645억원)과 비교하여 944억원이 많은 7,589억원입니다.

□ 한편, 우리 군의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3%이며(전국 평균 51.1%), 자체수입에서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6%(전국 평균 75.9%)입니다.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

※ 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예산규모

※ 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예산규모

※ 예산규모 : 자체수입+자주재원+보조금+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 2011년도 자체수입, 공유재산액, 채무 규모는 높은 반면 살림규모,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보다 낮아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의존재원확보와 지방채 조기상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세부내역은 정선군청 홈페이지 참조

특 수 공 시

2012 특수공시 대상사업 내역

【기준년도 : 2011년도】

연번	사업명	추진부서	담 당	실무자	전화번호	비고
1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시설	유환식	560-2015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	김진숙	560-2185	
3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녹색환경과	환경관리	유종덕	560-2330	
4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짚와이어)	녹색환경과	환경관리	유 신	560-2346	
5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	이경천	560-2983	
6	정선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광문화과	생활체육	유영균	560-2563	
7	소하천정비 사업	건설방재과	하천관리	박병태	560-2493	
8	사북12리(소잡느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방재과	재해예방	전찬우	560-2496	
9	북평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건설방재과	재해예방	전찬우	560-2496	
10	수해상습지(골지천.어천) 개선사업	건설방재과	재해예방	전찬우	560-2496	
11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	고승구	560-2524	

1.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신축

사업의 필요성

학습환경이 열악한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문화 전용 공간 마련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을 위함

사업 개요

- 위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00㎡, 건축연면적 6,544.78㎡(지하1층, 지상4층)
- 사업비 : 10,100백만원(도비6,500,군비3,600백만원)
- 주요시설 : 청소년장학센터, 주민복지시설, 체육관 등

사업진행 사항

- 2008년 04월 건립협의회 개최(사북초교 부지에 장학센터와 체육관 건립 잠정협의)
- 2008년 10월 사업관련 합의각서 작성(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정선군, 정선교육청, 학교장)
- 2009년 4월 사북청소년장학센터 건립 방침결정
- 2009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통과
- 2009년 5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10년 10월 공사착수
- 2012년 1월 공사완료

기대효과

- 폭 넓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문화·복지공간 제공으로 지역자치활동 등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비	10,100	-	6,500	210	3,390

■ 2.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의 필요성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 학부모 부담경감, 지역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 소비촉진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유치원, 초.중.고교 58개교 4,181명
- 지원내용 : 학교급식비(중식)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30개 품목)
- 사업기간 : 2010. 8월 ~ 지속

■ 사업진행 현황

- 정선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2012. 3월
- 2010년 8월부터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 ▶ 60개교 4,451명 687,9603천원(군비)
- 2011년 예산지원 : 3,192,445천원 (교특 1,909,846 도비 14,592 군비 1,268,007)
 - 무상급식 : 2,904,317천원
 - 친환경농산물 지원 : 288,128천원
 - ▶ 친환경인증쌀, 친환경 부식류 등 30개 품목 지원
 - ※ 2012년 예산 : 3,745,583천원

■ 기대효과

-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 업 비	3,192	-	-	-	3,192

■ 친환경 무상급식 전경사진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3.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사업의 필요성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함양 및 건전한 산림·문화 휴양단지 조성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기여

사업 개요

- 위치 :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 17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48,966㎡, 조성면적 86,000㎡
- 사업비 : 8,305백만원
(국고: 3,597, 시·도비: 1,357, 시·군비: 3,351)
- 주요시설 : 상징광장, 전망데크, 오토캠핑 야영장, 편의 및 위생시설 등

사업진행 사항

- 2002년 10월 ~ 2003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환경부, 강원도)
- 2004년 07월 ~ 2005년 0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6년 12월 04일 시설공사 발주(계약)
- 2008년 03월 27일 자연휴양림 지정고시(산림청)
- 2009년 02월 18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강원도)
- 2009년 04월 30일 정선군 관리계획 시설(도로)결정
- 2009년 08월 19일 자연휴양림 지정 변경고시(산림청)
- 2010년 01월 29일 군 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인가
- 2011년 12월 30일 시설공사 준공

기대효과

-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조성으로 다양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 인근 관광지와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주민 삶의질 향상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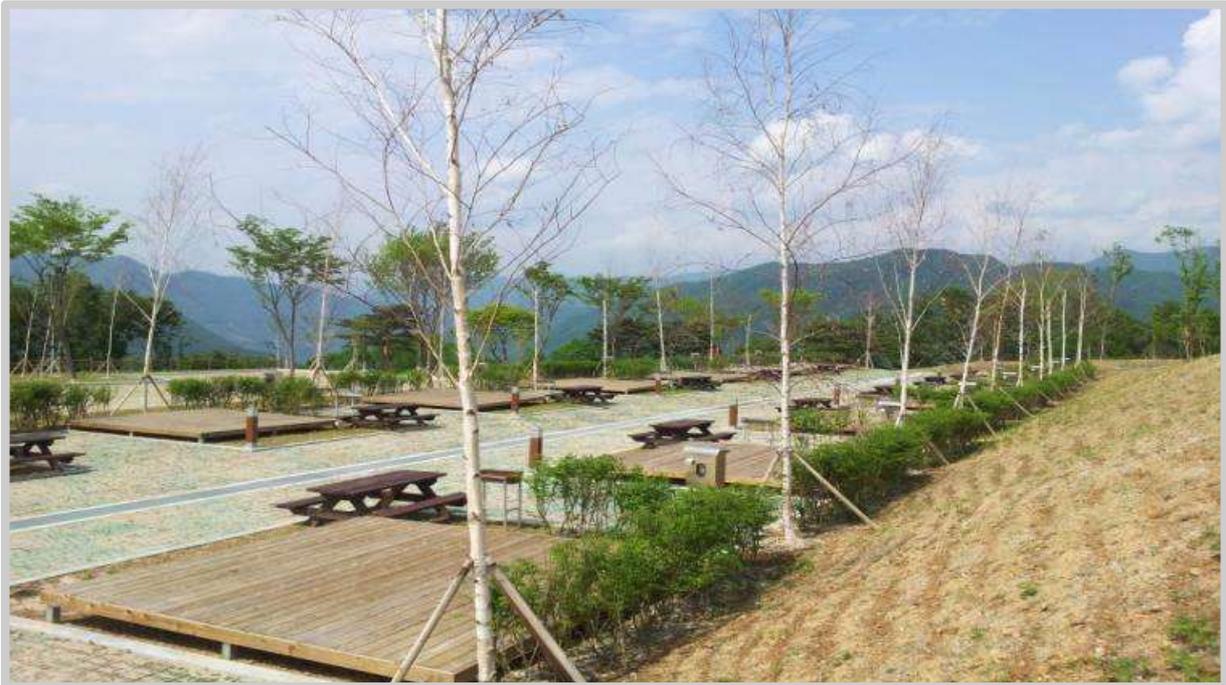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 업 비	8,305	4,319	900	2,623	463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준공완료 전경사진



4. 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짚와이어)

사업의 필요성 병방산 일원 친환경 체험시설 도입으로 생태관광 여가 수요부응 및 청정 생태관광 중심지로 부각

■ 사업 개요

- 위치 :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1년 ~ 2012년
- 사업규모 : 스카이라운지 1식, 탑승 4라인/1.1km
- 사업비 : 35억원(군비 17억원, 민자 18억원)
- 주요시설 : 스카이라운지, 짚와이어 탑승 4라인, 스카이워크 등

■ 사업진행 사항

- 2011년 1월 에코랜드 조성사업 투자협약 체결(LOI)
- 2011년 2월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정
- 2011년 3월 ~ 4월 계약입찰 공고
- 2009년 6월 시공사 선정 및 발주(계약)
- 2011년 9월 군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 고시
- 2012년 6월 자연체험시설 및 부대공사 준공
- 2012년 6월 23일 정선 아리힐스 개장

■ 기대효과

- 친환경 레저시설 도입에 따른 정선 생태관광 시너지효과 제고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벨트화 추진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비	3,499	-	-	-	3,499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짚와이어 운영 사진



5.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사업

사업의 필요성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고비용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친환경농업 전환

사업 개요

- 위 치 : 2개소(정선읍 굴암리, 북평면 남평리 1031)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사업규모 : 10개사업(친환경 농자재, 경축순환자원화, 산지유통시설 등)
- 사업비 : 10,450백만원(국비 5,000 도비 1,200 군비 3,250 자부담 1,000)
- 주요시설 :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친환경축사, 수도원에 공동육묘장, 우렁이 양식장,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등

사업진행 사항

- 2008년 12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확정
- 2009년 02월 사업추진주체 영농법인설립
- 2009년 03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 2009년 08월 사업대상지 부지구입
- 2010년 08월 설계완료
- 사업추진
 - 완료사업 : 8개사업(우렁이양식장, 수도원에 공동육묘장 등)
 - 추진중 : 2개사업(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여건개선으로 농업경쟁력 선점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비	10,450	-	1,380	4,670	4,400

■ 사업단지 조감도/정선읍 굴암리



■ 사업단지 조감도/북평면 남평리 1031



6. 정선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의 필요성

폭 넓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공간 제공으로 지역자치활동 등 주민 참여 기회 확대

사업 개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432-19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사업규모 : 부지면적 4,351㎡, 건축연면적 2,935㎡(지하1층, 지상2층)
- 사 업 비 : 86억원(국비31억원, 지방비55억원)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사업진행 사항

-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지원 사업신청 계획통보 : '09.01.07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결과 통보 : '09.02.23
- 센터건립 지원협약서 체결 : '09.03.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체결 : '09.11.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10.05.10
- 사업착공 : '10.08.23 ● 사업준공 : '11.11.18

기대효과

-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었던 군민의 생활체육참여 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체육 붐 조성
- 생활체육에서 강조되는 '평생스포츠 활동'의 기반조성 계기 마련
- 각종 실내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사 업 비	8,600	110	2,990	5,500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준공완료 사진



7. 소하천정비 사업

사업의 필요성

미정비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수해우려와 투자효과가 큰 소하천에 대하여 우선 정비 추진

사업 개요

-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기우천)외 4개 소하천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사업규모 : 호안정비 L=3.949km
- 사 업 비 : 65.2억원(국비 32.6억원, 군비 32.6억원)

사업진행 사항

- 2011년 1월 ~ 2011년 2월 실시설계 용역
- 2011년 2월 사업시행계획 수립
- 2011년 2월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 2011년 2월 25일 사업착수
- 2011년 12월 30일 사업완료

기대효과

- 수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친화적 정비로 환경보존 및 친수공간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사 업 비	6,524	-	-	6,524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준공완료 전경사진



8. 사북12리(소잡는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의 필요성

집중호우시 급경사지에 위치한 주택의 붕괴위험

사업 개요

- 위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12리 일원
- 사업기간 : 2009년 ~ 2012년
- 사업규모 : 보상(건물 80동, 토지20필지), 법면정비 18,721㎡
- 사업비 : 108억원(국60%, 지방비40%)

사업진행 사항

- 2005년 12월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 2009년 1월~12월 실시설계 및 보상(건물 17동, 토지4필지)
- 2010년 1월~12월 보상(건물 29동, 토지5필지)
- 2011년 1월~12월 보상(건물 34동, 토지11필지)
- 2012년 법면정비 18,721㎡ 및 사업준공(6월)

기대효과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주변환경 개선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9년	2010년	2011~2012
사업비	10,791	1,340	3,508	5,943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준공완료 전경사진



9. 북평2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의 필요성

집중호우 시 하천의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수침수 위험

■ 사업 개요

-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820-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1년
- 사업규모 : 배수펌프장 1식
- 사 업 비 : 32억원(국60%, 지방비40%)
- 주요시설 : 배수펌프장

■ 사업진행 사항

- 2010년 1월~8월 실시설계
- 2011년 1월~12월 사업추진 및 준공

■ 기대효과

- 침수피해 예방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 업 비	3,260	-	-	142	3,118

■ 위치도



■ 준공완료 전경사진



1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사업의 필요성

지방하천중 미정비 하천에 대하여 하천재해예방 기본계획에 의거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추진

사업 개요

- 위 치 : 정선군 화암면 물운리, 북평면 남평리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사업규모 : 호안정비 L=0.886km, 교량1식, 하도준설 129,750m³
- 사 업 비 : 38.3억원(국비 23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2.3억원)

사업진행 사항

- 2011년 1월 ~ 2011년 3월 실시설계 용역
- 2011년 3월 사업시행계획 수립
- 2011년 3월 사업발주 및 입찰공고
- 2011년 3월 18일 사업착수
- 2011년 12월 30일 사업완료

기대효과

- 수해위험요인 사전제거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자연친화적 정비로 환경보존 및 친수공간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 업 비	3,834	-	-	-	3,834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준공완료 전경사진



11.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사업의 필요성

댐상류 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도모

사업 개요

-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664번지 일원의 16개소
- 사업기간 : 2004년 ~ 2011년
- 사업규모 :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4개소, 마을하수도 개량 8개소, 하수관거 L=38km
- 사업비 : 475억원(국고 371, 한강수계기금 81, 군비 23)
- 주요시설 : 하수처리장(여량,임계), 마을하수도(문곡,낙동,구절,화암), 마을하수도 개량(송오,돌목,하동,봉정,북평,가평,문화,봉산), 하수관거L=38km, 통합센터 1식

사업진행 사항

- 2002년 11월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계획 수립
- 2003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한국환경공단)
- 2005년 5월 사업추진 협약체결(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 2006년 9월 시설공사 계약
- 2007년 12월 ~ 2011. 12월 공사추진(1~6차) 및 준공

기대효과

- 집중투자를 통한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생활여건개선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 생활하수의 차집 및 처리로 방류수계 수질개선에 기여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사업비	47,512	13,661	15,928	8,233	9,690

■ 준공완료 전경사진



■ 준공완료 전경사진



정선군 공고 제 2012-653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8월 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 맞춤형 복지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위촉직 민간 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개정(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0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 (FAX 560-258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60-2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③ 기타 참고사항

붙임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10인 이상 20인 이하”를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을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align="center"><u>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복지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u>10인 이상 20인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u>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③ <u>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u></p> <p>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u>10인 이상 20인 이하</u>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정선군 복지기획담당 및 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⑥ ~ ⑦ (생략)</p>	<p align="center"><u>정선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u>사회복지사업법</u>」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u>제1조의4 및 제1조의5</u>-----</p> <p>-----</p> <p>-----</p> <p>-----</p> <p>제3조(구성) ① -----</p> <p>----- <u>10명 이상 30명 이하</u> -----</p> <p>-----</p> <p>② ----- 「<u>사회복지사업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③ <u>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④ -----</p> <p><u>10명 이상 30명 이하</u>-----</p> <p>⑤ -----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1조의5제2항 <u>각 호의 어느 하나</u>-----</p> <p>-----</p> <p>-----</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정선군 공고 제2012-658호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의거 실태조사 및 현지 점검결과 소재 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2항제6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9. 05.

정 선 군 수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소재확인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업체 : 불임 (34개업체)

3. 공고기간 : 2012. 09. 05 ~ 2012. 10. 04 (30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해당 대부업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정선군에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이 제한됩니다.

○ 대부업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정선군청 지역경제과(☎ 560-21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 대부업체 1부.

[소재확인 공시송달공고 대부업체]

순번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비고
1	강원정선2011-대부6 강원정선2011-대부중개2	현대대부전당사	박종만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152번지 1호	소재지불명
2	강원정선2010-대부42 강원정선2010-대부중개18	대부리스전당사	박춘현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04번지 11호 1층	소재지불명
3	강원정선2012-대부6 강원정선2012-대부중개	원대부전당사	김기석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20번지 4호	소재지불명
4	강원정선2010-대부3	서울대부전당사	김정길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36번지 23호	소재지불명
5	강원정선2009-대부64	천안대부전당사	전완수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166번지 9호 A동 202	소재지불명
6	강원정선2010-대부16	못골대부25시	하명숙	강원도 정선군 고함읍 고한리 산213번지 못골아파트 1동 102호	소재지불명
7	강원정선2011-대부46 강원정선2011-대부중개11	해피론대부전당사	조미옥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무릉리 776번지 6호	소재지불명
8	강원정선2010-대부44	선물대부전당사	임연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3번지 5호	소재지불명
9	강원정선2011-대부52	대부승부전당사	이영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17번지 3호 1층	소재지불명
10	강원정선2010-대부47	콜전당사대부	강옥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번지 69호	소재지불명
11	강원정선2011-대부1	짱구대부전당사	유영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번지 7호	소재지불명
12	강원정선2010-대부35	휘닉스대부	박흥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1번지 15호	소재지불명
13	강원정선2009-대부54	노다지대부	궁용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102호 수정빌딩103호	소재지불명
14	강원정선2011-대부5	행운대부전당사	이동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52호	소재지불명
15	강원정선2010-대부32	강남대부전당사	이미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73호	소재지불명
16	강원정선2010-대부15	골든대부전당사	정봉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77호	소재지불명
17	강원정선2010-대부40	솟북대부전당사	김영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56번지 84호	소재지불명
18	강원정선2010-대부9	VIP대부전당사	강명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번지 142호	소재지불명

순번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비고
19	강원정선2010-대부51	스마트대부전당사	조진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번지 37호 8통	소재지불명
20	강원정선2009-대부45	신대성대부전당사	박경택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7번지 6호	소재지불명
21	강원정선2009-대부55 강원정선2009-대부중개12	뉴대신전당대부	이창영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7번지 6호	소재지불명
22	강원정선2010-대부4 강원정선2010-대부중개1	신조은대부전당사	신승용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7번지 8호	소재지불명
23	강원정선2010-대부33 강원정선2010-대부중개15	크로바대부전당사	곽승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15호	소재지불명
24	강원정선2009-대부39	도신대부	박기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52호 3통 5반	소재지불명
25	강원정선2011-대부29	한강파이낸셜대부	장성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77호 2층	소재지불명
26	강원정선2010-대부중개4	고니대부전당사	이재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78호	소재지불명
27	강원정선2011-대부25	아이티머니대부	박종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번지 78호	소재지불명
28	강원정선2010-대부14	독도대부전당사	박민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번지 6호 301호	소재지불명
29	강원정선2011-대부45 강원정선2012-대부중개1	오케이대부전당사	황종기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번지6호 영서B/D 101호	소재지불명
30	강원정선2009-대부63	뉴신우전당사대부	김이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번지 30호	소재지불명
31	강원정선2011-대부3	신우대부전당사	손정현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7번지 30호	소재지불명
32	강원정선2009-대부65 강원정선2009-대부중개15	신돼지꿈대부전당사	김민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86번지 2호	소재지불명
33	강원정선2009-대부58	보스전당사대부	안희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97번지 11호	소재지불명
34	강원정선2010-대부2	부산전당사대부	이병주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7번지 10호	소재지불명